

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5조제1호중 “2,500만원(법인은 1억원)”을 “400가마/80kg(법인은 2,000가마/80kg)”으로 한다</p> <p>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5조제1호중 “500가마/80kg”을 “400가마/80kg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	<p>2. 소비자단체의 대표</p> <p>3.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4. 서울특별시 지역의 소비자</p> <p>제 4 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 5 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 6 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 7 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상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제 8 조(간사)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,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상정계정이 된다.</p> <p>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제 9 조(회의록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1. 회의의 일시 및 장소</p> <p>2. 출석위원의 직·성명</p> <p>3. 회의안건과 심의·결정내용</p> <p>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③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수당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,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(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·소매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)</p> <p>2. 유통산업발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등에 대한 권고</p> <p>3. 기타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 3 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지역경제국장이 되고,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장, 중소기업과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직원</p>	